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 마련〉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5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01. 06.
3. 회 부 일 : 2025. 01. 0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행 등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피해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9조(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소방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 <u>1. 「형법」 제2편 제25장, 제30장, 제33장 또는 제42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u> <u>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u>

현행	개정안
	<u>폭력범죄 행위</u> 3.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의 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소방청장은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관계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현행	개정안
	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등)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치(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상해)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면서 전체 소방활동 방해행위 중 89.1%(전체 1,228건 중 1,094건)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¹⁾.

1) 최근에도 119 구급대원이 이송 중인 환자에게 맞아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출처: 동아일보, “소방구급대원, 환자에게 맞아 코뼈 골절 ‘날벼락’”, 2025. 2. 5..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3456?sid=102>)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발생건수	유 형 별				
		폭행/상해	성희롱(추행)	기물파손	진로방해	기타
계	1,228 (100.0)	1,094 (89.1)	16 (1.3)	32 (2.6)	13 (1.1)	73 (5.9)
2024년(상반기)	154	132	1	3	0	18
2023년	254	222	9	7	3	13
2022년	317	288	3	9	3	14
2021년	259	232	1	10	4	12
2020년	244	220	2	3	3	16

(자료 : 소방청)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²⁾,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소방활동재해”로 정의하고(제2조제2호), 소방활동재해와 관련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제3조), 소방관서장·소방공무원의 의무(제4조 및 제5조) 및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및 제8조) 등에 관한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을 두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진단, 진료, 심신건강연구(제10조, 제10조의2)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방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요양 및 재활(심리상담 포함) 등의 급여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³⁾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라⁵⁾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원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3. (이하 생략)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수사개시·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에 상해·폭행 등의 소방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와 수사의뢰·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상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힘. 다만,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10조의2(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등에 따라 이미 지원 중이고⁶⁾, 개정안의 “소방활동 침해행위”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상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로 대부분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6) 현행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 현황은 [참고] 참조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는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 현황

(자료: 소방청)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현황 >

1. 마음건강 설문조사 (선별)		
• 개인별 정신건강 검진 및 고위험군 선별, 보건안전지원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소 소방공무원 ※ 24년 60,569명 응답 (93%)	‘15년~ 현재
2. 찾아가는 상담실 (관리)		
• 계약에 의한 외부 상담기관을 선정 • 전문 심리상담사가 소방기관 방문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상담·치유 수행	• 소 소방공무원 ※ 23년 70,759명 상담	‘15년~ 현재
3.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회복)		
• 설문조사·심리상담 결과, 심신안정 지원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전문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심신건강 치료·관리가 필요한 소방공무원 ※ 23년 2,605명 참여	‘12년~ 현재
4.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치료)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전액 국비 지원	• 병원 검사·진료가 필요하여 실시한 소방공무원 ※ 23년 8,034명 지원	‘12년~ 현재

※ **긴급 심리지원** :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

- ▶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 ▶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 ▶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 ▶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발생
- ▶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 ▶ 현장활동 시 부상 및 상해 발생
- ▶ 기타 직업적 또는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